

Managing Your Work and Stay Visa during COVID-19 Pandemic: An Update for Foreigners in Indonesia ^{P1}

Further Guidelines for Deadline Extensions for Certain Tax Mat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3}

COVID-19 팬더믹에 따른 취업허가(Working permit)와 체류허가(Stay Visa) 절차 관련 업데이트

고용부(Ministry of Manpower)와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는 COVID-19 팬더믹 기간동안 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무하거나 방문중인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와 체류허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변경된 규정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인 여행 제한

법무인권부는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인 국내 여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 No. 11 Year 2020 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내 입국 및 경유가 2020년 4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동 규정은 하기와 같이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입국이 허용됩니다:

- a. 영구거주허가(*Izin Tinggal Tetap/ITAP*)를 받거나 한시적 거주허가(*Izin Tinggal Terbatas/ITAS*)를 받은 경우;
- b. 외교관 관련 비자 소유자;
- c. 외교관 관련 체류 허가 소유자;
- d. 의료 지원 및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품 및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외국인;
- e. 운송업종의 승무원;
- f. 국가 전략 프로젝트(*Proyek Strategis Nasional/PSN*)를 수행하는 외국인.

상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입국시 반드시 충분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 상대국가의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영문건강확인서 (Health Certificate/Fit to Fly certificate);
- b.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정하는 14 일 기간의 자가격리에 동의하는 확인서;
- c. 인도네시아 입국 전 최소 14 일간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출입국도장 또는 비행기티켓). 그러나, 현재 COVID-19 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은 준수하기 어려우며 출입국 관리소의 COVID-19 관련 FAQ 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유예됩니다.

2.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비자 절차 완화

상기 규정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방문 중이거나 거주 허가를 소유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비자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 a. ITAP 또는 ITAS 가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긴급거주허가(Emergency Stay Permit)를 발부합니다.
- b. 현재 방문비자(Visa on Arrival, Single Entry Visa, Multiple Entry Visa 또는 Visa Exemption)를 보유한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긴급거주허가를 발부합니다.
- c. 외국인이 이미 출국허가승인(Exit Permit Only/EPO)을 받은 경우에도 동 비상사태 기간동안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EPO 를 한 외국인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체류허가는 연장되나, 취업허가는 연장되지 않음).

긴급거주허가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COVID-19 팬더믹 비상사태 선포를 해지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긴급거주허가 소유자는 거주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팬더믹 기간동안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 긴급 비자 완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TAP 또는 ITAS 의 소유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는 자동적으로 ITAP 과 ITAS 의 효력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동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신규 ITAP 또는 ITAS 의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기간이 유효하지만 복수입출입허가(Multiple Exit Re-entry Permit, MERP)가 만료된 경우에도 MERP 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은 신규 비자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한시적 비자 서비스의 중단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외교비자, 서비스비자,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근로자의 한시적 거주비자(Visa 312)를 제외한 비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비자서비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때까지 중단됩니다.

4. 취업허가(Working Permit) 신청의 한시적 중단

고용부는 신규 취업허가를 2020년 4월 8일부터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때까지 중단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고(*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및 취업허가 보고도 중단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a. 법적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 b. ITAS 또는 ITAP을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장기계약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상대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취업근로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비자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Global Mobility Service 팀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COVID-19 팬더믹 기간동안 세무관련 사항의 마감기한 연장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정부는 COVID-19 팬더믹 기간동안 국가 경제 안정화를 목적으로 Perppu-1를 2020년 3월 31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Perppu-1는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하여 *force majeure*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관련 사항의 마감기한을 연장하는 등 많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ppu-1의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9번([TaxFlash No.09/2020](#))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DGT)는 Perppu-1에서 규정한 마감기한 연장의 시행을 위하여 DGT 공무원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Circular Letter No.SE-22/PJ/2020 (SE-22)를 2020년 4월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SE-22는 *force majeure* 기간을 국가재난관리당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 BNPB*)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 5월 29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기가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세무 이의신청의 제출(신청)

이의신청은 과세결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SKP*)가 받은 시점(또는 최초 원천징수결정 납부 고지서(initial tax withholding/collection)를 받은

시점)부터 반드시 3 개월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Perppu-1 은 동
이의신청 신청기간을 기존 3 개월에서 6 개월을 연장하여 총 9 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 마감기한 연장은 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하여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PBB 법에서 규정한 유예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금 환급금의 지급

Perppu-1 는 세금 환급금 지급에 대하여 1 개월 연장하여 하기의 시점부터
지급까지 총 2 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a) 환급 과세결정서(SKP)의 발행;
- b) 조기 환급 결정서의 발행;
- c) 이의신청의 결정서, 행정벌과금의 경감/면제 결정, 불합리한
과세결정서의 경감 또는 취소, 이자청구지급;
- d) 조세소송, 재심사(PK)의 결과문(승소로 인하여 환급포지션이 되는 경우).

세금 환급 신청에 대한 결정

Perppu-1 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사결정통지서의 발부 기간,
즉 세무조사 기간을 6 개월 연장하여 과세결정통지서(SKP)의 발부기간은
최대 18 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SE-22 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어느 시점에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관에게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가 조사단계에 있으며 과세예정통지서(*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SPHP*)가 발부 전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a) 필드감사가 10 개월로 연장(기존에는 6 개월); 또는
 - b) 데스크 감사(*office audit*)의 경우 8 개월로 연장(기존에는 4 개월).
2. SPHP 가 납세의무자에게 발부되고 그 결과로 환급 또는 납부포지션이
되었으며, 납세의무자가 SPHP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클로징미팅(*closing conference*)은 기존 세무조사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SPHP 발부 시점부터 2 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3. SPHP 가 납세의무자에게 발부되고 그 결과로 환급 또는 납부포지션이
되었으며, 하기의 경우에는 클로징미팅은 SPHP 발부 시점부터 4 개월
이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a) 납세의무자가 과세사항을 미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 b) 납세의무자가 COVID-19 팬더믹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절차가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하여 완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Force majeure 기간이 추가적인 연장없이 2020년 5월 29일로 종결되는 경우, 세무서는 환급결정 기한이 5월 30일 이후인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요청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존 세무조사 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연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Perppu-1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점부터 총 18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22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출석요청통지서(Surat Pemberitahuan Untuk Hadir, SPUH)를 SE-22 발행이전에 발부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는 force majeure 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 b) 지방국세청이 SPUH를 발부하기 이전인 경우에는 18개월의 연장된 기간이 적용되나, 지방국세청은 force majeure 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SPUH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은 PBB에 대한 이의신청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기본법 36조 1항(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에 대한 결정 절차 업데이트

Perppu-1은 하기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의 결정문 마감기한을 총 12개월(기존에는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a) 행정벌과금의 경감 및 면제 (1차 및 2차 청구시);
- b) 불합리한 과세결정통지서(SKP)에 대한 경감 및 취소 (1차 및 2차 청구시);
- c) 세금 징수 레터에 대한 경감 및 취소 (1차 및 2차 청구시)
- d) 세무조사 결과의 취소 결정

동 마감기한의 연장은 PBB에 대한 유사한 요청에 대한 사항에도 적용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 inhyuk.park@pwc.com

박재성 회계사

E: jay.y.park@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id.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id.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0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